

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유사 기능을 가진 통합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예 산 재 정 과
입 안 자	과 장	강 호 근
	팀 장	조 민 규
	담 당 자	조 형 우 (480-2535)